

## 2019년 협동조합 성북신나 정기총회 의사록

- 소집공고일 : 2019년 1월 3일(목)
- 개최연월일: 2019년 1월 26일(토) 오후 2시
- 장소: 무중력지대 성북 (서울 성북구 아리랑로 50)
- 총 조합원수: 53명
- 참석 조합원수: 17명
- 위임 조합원수: 12명
- 총회 의장: 오창민
- 참석 조합원 명단

연번	이름	유형	연번	이름	유형
01	김경아	위임	16	이영현	
02	박동광		17	서민중	
03	박동엽		18	김미소	위임
04	오창민		19	김영규	위임
05	이원재	위임	20	신현희	
06	이혜미		21	송효웅	
07	정혜영	위임	22	주세훈	
08	지강숙		23	홍승오	
09	황려진		24	진한나	위임
10	박현진		25	이예지	위임
11	임진규	위임	26	남윤호	위임
12	박종호	위임	27	김동훈	
13	이승아		28	이선애	
14	윤미소	위임	29	김규일	
15	이한솔	위임			

### 1) 개회선언

의장이 2019년 협동조합 성북신나 정기총회 개회를 선언함.

### 2) 성원보고

의장이 이선애 조합원에게 성원 보고를 요청함.

이선애 조합원이 총회 구성원 총 53명 중 현재 참석 15명, 서면 위임 12명으로 현재 27명이 출석하였다고 성원 보고함.

의장이 정족수 27명으로 총회가 개회됨을 선포함.

### 3) 의사록 서기와 서명날인인 선임

의장이 서기 1명과 서명날인인 3명을 추천을 받음.

추천이 없으므로 의장이 지명하여 서기 이혜미 조합원, 서명날인인 3인 이선애, 서민중, 주세훈 조합원으로 선임됨.

의장이 동의, 재청을 물음.

박동광 조합원 동의함. 김동훈 조합원 재청함.

### 4) 의사일정 확정

의장이 의사일정을 발표함.

- 1호 의안 <2018년 사업보고 및 결산안 승인의 건>
- 2호 의안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 3호 의안 <정관 및 규약 개정의 건>
- 4호 의안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 5호 의안 <기타 안건>

의장이 의사일정 확정 건에 대한 동의, 재청을 물음.

이선애 조합원 동의함. 박동광 조합원 재청함.

### 5) 2018년 사업보고 및 결산안 승인의 건

- 조합운영 : 오창민 이사장
- 청년지원 : 이선애 조합원
- 지역재생 : 송은별 (무중력지대 성북 직원)
- 결산안 : 오창민 이사장

의장이 2018년 사업보고 및 결산안 승인에 관한 동의, 재청을 물음.

김동훈 조합원 동의함. 이선애 조합원 재청함.

## 6)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 감사보고서 발표 : 김동훈 감사

의장이 감사보고서 승인에 관한 동의, 재청을 물음.

이혜미 조합원 동의함. 이영현 조합원 재청함.

## 7) 정관 및 규약 개정의 건

- 자료집 정관 및 규약 변경(안)

### <제 8조 (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3호 후원자 조합원 삭제에 관한 건>

의장 :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은 손을 들어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박현진: 행정적 절차 때문에 고민한 부분이라는 것에는 이해가 되지만, 후원자조합원을 삭제하는 대신에 그동안 지지하고 응원해주던 분들이니 후원회원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탈퇴하라고 출자금을 돌려주는 것 대신에 어려운 행정적 절차들을 설명하고 후원 조합원들을 함께 안고 가면서도 절차를 수월하게 하는 방법을 고민해보면 좋겠어요. 조합이라는 게 조합원들의 힘으로 돌아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조합원들 외에도 성북신나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지자로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의장 : 이사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했고, 후원회원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후원회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사무국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심적 부담감은 똑같아요. 조합원들에게 고마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이 동시에 있어요. 사업적, 활동적 파트너로 만났다면 가볍게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조합원의 관계로 만나면 부담감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박현진 : 후원회원이라는 이름 자체에 적극적인 활동은 할 수 없지만, 당신들의 활동을 지지하겠다는 마음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에 만 원이라도 응원하는 마음으로 후원하는 거죠. 내가 직접 활동을 할 수 없지만, 그 활동이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제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박동광 : 말씀하시는 내용에 동의하고 제가 제안하고 싶은 부분은 조합은 총회를 개최하는 부분이 큰데 조합원이 100명이라 하면 오늘은 총회를 개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행정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신 것 같고.

감사님이 지적해주신 것처럼 활동기반들을 늘려가기 위한 사업 외적인 조합원들의 활동은 다른 방식으로 풀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운영위원회를 조직해서 그 안에서 TF를 만들어 논의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성북신나는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이지만 사회적 활동이 있어서 후원회원 개념으로 후원자 조합원이 존재했다고 생각합니다. 조합원들 중에는 성북신나를 통해 공적인 부분, 사회적 운동에 기여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총회를 개최하는 것부터 어려움이 있으니 운영위원회를 꾸려서 생산자 조합원과 탈퇴라는 옵션 말고, 다른 옵션을 만들어서 사업에 함몰되어 활동을 못 하게 되지 않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북신나의 지역 활동, 사회 활동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염두 하면서 운영 위 진도를 나가는 것은 어떠신지 제안합니다.

박현진 : 후원자 조합원을 삭제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의장 : 후원자 조합원 삭제에 대해서 동의하시거나 긍정적인 의견이신 분들은 손을 들어 의견을 표해주세요. 손을 들지 않은 이승아 조합원의 의견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이승아 : 제가 활동도 안 하고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까지는 생산자 와 후원자의 경계가 필요가 없었지만 지금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후원자 조합원을 삭제하려면 생산자 조합원의 개념이 명확해져야 하는데 제명이 되는 조건과 생산자 조합원의 자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2회 이상 총회만 참여하면 생산자조합원이 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처음에 “성북신나와 뜻을 함께하고 가끔 내가 할 수 있을 때 함께 활동할 수 있으면 좋겠어”라는 마음으로 했어요. 지금은 조합의 의지가 굳건한 것 같은데, 처음에 지지와 동의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었기 때문에 손을 들지 못한 것 같아요.

의장 : 총회는 조합의 의사결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데 총회 때 전화도 안 받고 문자 회신도 안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있어요. 그래서 나온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서면으로 위임하신 분들은 총회에 참석하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동광 : 창업할 당시에 서울에 우리 같은 협동조합이 100개도 없어서 모델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과업이나 내용 들을 여기저기서 선정해서 가져왔던 것 같고, 그래서 정관이 이 모습으로 있는 것 같아요. 상근사무국이 없는 상황에서 작년에는 이사회에서 많이 맡아서 해주셨어요. 상근사무국 1인을 꾸리자는 이야기를 했고, 그 핵심은 운영위원회를 조직해서 권한과 예산을 가지고 조합원의 활동 들을 하면 어떨까 생각해요. 조합의 형태에 관한 이야기도 그

안에서 TF를 꾸려서 올해 진행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의장 : 총회를 마치고 한 달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조합의 형태, 활동, 생산자 조합원의 역할에 대해 논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혜미 조합원 동의함. 이선애 조합원 재청함.

#### <제13조 제명 조항 변경에 관한 건>

박동광 : 제명에 대해서 총회 2회 이상은 누적 적용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조항이 통과된다면 올해부터.

김동훈 : 2회라고 제안을 했던 것은 연속해서 2회 불참이 발생했을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누적이 과하지 않나. 그리고 누적을 카운팅하는 것도 어렵다.

의장 : 문장이 모호하니 연속하여 2회 이상 참석하지 않은 경우라고 바꾸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요? 동의하십니까?

김동훈 조합원 동의함. 박동광 조합원 재청함.

#### <제 16조 출자 3호 삭제에 관한 건>

의장 : 처음에 생산자 조합원은 이사와 조합에 고용되지 않는 창립 멤버들을 지칭했어요. 현재도 생산자 조합원의 권한과 자격을 세게 가져가는 의미에서 변경 없이 5좌로 하자는 의견입니다.

박동광 : 후원자 조합원 삭제 건과 연계되는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변화가 있는 조항이 아닙니다.

의장 : 생산자조합원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지금, 5좌라는 금액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승오 : 예전에 통화했었는데, 그때도 설명을 들었지만 모호한 지점이 있습니다. 현재 진한나 조합원과 극단 99도를 하고 있고, 생산자 조합원으로 연계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생산자조합원으로 한다면 출자를 10좌를 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단체에서는 부

담이 되고, 그래서 한 사람만 생산자 조합원으로 하려고 하는데 의결권은 조합원 한 명당 하나가 발생하는 거예요. 활동이나 의결구조에서 공동으로 하고 있는데 법인 혹은 단체 조합원은 좀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동광 : 조합은 법인 조합원을 둘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한사람이 법인을 대표하여 의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성북신나는 법인 조합원에 대한 구조가 없습니다.

운영위원회나 회원자격을 논하는 TF에서 단체 조합원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훈 : 출자금 증좌의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의장 :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 출자금이 조합원의 자격요건이기 때문에 다음 총회 전에 확인합니다. 그리고 정관에는 출자금은 2회 분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박현진 : 조합원들에게 이 과정을 잘 정성스럽게 설명하는 것은 필요할 것 같아요.

박동광 : 출자금을 내야 조합원이 되는 것인데, 출자금을 내지 않으면 조합원이 아니기에 기한이 없는 것입니다. 조합회비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확인할 수 있으니 운영위가 생기면 출자금에 대해서도 확인하는 절차를 만들면 어떨까.

박현진 : 조합가입의 의사를 밝히고 언제까지 출자금을 내겠다고 계획을 밝히면 자격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확인해주세요

김동훈 : 현재 후원자에서 생산자로 전환해야 하는 조합원 중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격과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구별해서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의장 : 일단 올해 임시총회가 열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내년 총회 때까지 증좌하지 않아도 활동할 수 있으니, 증좌 기간을 유예하여, 2020년 총회 전까지 출자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1년 동안 활동이나 교류를 보고 생산자 조합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하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박현진 조합원 동의함. 김동훈 조합원 재청함.

### <규약 조합경비 규약 변경에 관한 건>

박현진 : 연회비를 낼 때 조건을 더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연회비를 한 번에 내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2회 분납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떨까요.

의장 : 현재는 변경하면 정기총회 후 한 달 이내이기에 2월 26일까지 납부를 해야 하는데 회부납부 기간을 여유 있게 둘까요?

김동훈 : 분기인 3개월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박동광 : 회비를 내야 운영위원회가 운영되기 때문에 이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김동훈: 분납은 사무국에서 힘들지 않을까요?? 3개월 이내에 완납하는 것으로 한다고 정리하는 것이 어떨까요?

의장 : 조합회비는 연회비 10만 원으로 3개월 내로 내는 것으로 정하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김동훈 조합원 동의함. 이혜미 조합원 재청함.

### 8)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 조합운영 : 오창민 이사장
- 청년지원 : 박동광 조합원
- 결산안 : 오창민 이사장

의장이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에 관한 동의, 재청을 물음.

이선애 조합원 동의함. 이혜미 조합원 재청함.

### 9) 기타 안건

- 박동광 조합원이 운영위원회를 기타 안건으로 상정함.

조합회비의 20-30% 정도를 활동비로 사용할 예정

총회 이후 한 달 내로 소집하여 조직하기로 함

- 박현진 조합원이 자료집을 만들 때 글자 포인트를 크게 만들어주기를 요청함.

### 10) 폐회 선언

의장이 상정할 다른 안건이 있는지를 묻고 없음을 확인한 후 폐회에 대한 의사를 물음.

조합원의 만장일치로 폐회를 선언함.

정관 제33조(총회의 의사록 -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에 의하여 의사 경과 및 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본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서기 그리고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

2019년 1월 26일 **협동조합 성북신나**

의장 오창민 (인)

서기 이혜미 (인)

조합원 서민종 (인)

조합원 이선애 (인)

조합원 주세훈 (인)